

[일련번호 : 1]

# 경기도체육회

## 기관경고

[제 목] 국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광주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비롯하여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지원받는 국·도비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후 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 「정관」 제39조(재산의구분), 제40조(자원), 제45조(예산편성 및 결산) 등에 따라 시비를 비롯하여 국·도비 역시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체육회는 시비는 매년 이사회를 통해 예산편성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산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·도비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있다.

또한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는 정기종합감사 공통 지적사례를 안내하여 본 처분을 사전 안내<sup>1)</sup>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·도비 예산편성을 심의·의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.

1) 경기도체육회 공정감사실-870(2023.07.26.), 공통 지적사례 안내

**[조 치 사 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**

빠른시일내에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공지하여 국·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2]

# 경기도체육회

## 주의조치

[제 목] 이사회 운영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이사회 3회와 임시이사회 6회, 총 9회를 개최하여 각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. 이사회 개최시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에서 정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결한 임원의 수를 기산하여 성원을 보고하거나, 등기 및 비등기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를 재적인원으로 하여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기산하여 성원을 보고, 각 이사회를 진행하였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이사회는 「정관」 제1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 또한 이사회의 경우 서면결의를 허용하고 있는데,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「정관」 제21조(서면결의)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
또한, 민법 제49조<sup>2)</sup>에서는 ‘이사’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할 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‘비등기 이사’의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여야 하며, 의사 및 의결정족수나 의결권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# 가. ‘서면결의’ 운영 부적정

체육회는 금번 정기종합감사 수감범위인 최근 3년간(‘21~’23년) 정기 이사회 3회를 비롯한 임시이사회 6회, 총 9회를 개최하였고, 체육회 「정관」 제19조에 따라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기산하여 각 이사회 개최前 성원을 보고하였다. 체육회는 이사회 성원에 대한 근거를 증빙하기 위하여 각 이사회별 참석 서명부를 작성하였는데, 실제 참석한 임원의 서명과 ‘서면결의’를 제출한 임원의 수를 합산하여 의사정족수를 기산하여 성원을 보고하였고, 의결정족수 또한 같은 방법으로 기산하여 의결한 것이 확인되었다.

**[표1] 체육회 이사회 참석 현황**

(단위 : 명)

연 도	회의명	참석현황(의사 및 의결정족수)				비 고
		재적	계	실참석	서면결의	
2021	‘21 정기이사회	63	**	**	**	
2022	‘22 정기이사회	68	**	**	**	
	‘22 임시이사회	64	**	**	**	
2023	‘23 정기이사회	67	**	**	**	
	‘23 1차 임시이사회	77	**	**	**	
	‘23 2차~5차 임시이사회		‘서면결의’로 운영			

- 2) 민법 제49조(법인의 등기사항)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 
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  
 1. 목적 2. 명칭 3. 사무소 4. 설립허가의 연월일 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
 6. 자산의 총액 7.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. **이사의 성명, 주소** 9.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

체육회 「정관」 제19조에 따르면 이사회의 ‘개회’는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, ‘의결’의 경우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. 즉,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기산에 관하여는 실제 참석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, 「정관」 제18조 제7항에 따라 이사의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의 운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,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이사회에서 일부 임원들의 서면결의 제출한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산은 허용될 수 없음이 타당하다.

또한,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이며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<sup>3)</sup>의 태도인 점에서도 이사회의 경우 위임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어야 한다.

#### 나. ‘비등기이사’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

체육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‘22.6.9.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며, 관련 법률에 따라 체육회 임원을 등기하였다. 민법 제49조(법인의 등기사항)에서는 이사의 서명,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, 그 변경사항 발생시 동법 제52조<sup>4)</sup>에 따라 변경등기하여야 하여야 한다. 이에 등기이사과 비등기이사가 구분되어야 하며, 이사회 개최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또한 ‘등기이사’만을 기산하여 운영해야 함이 타당하다.

체육회는 법인설립이후 2023년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 총 6회(정기 1회, 임시 5회)를 운영하면서 재적인원,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산시 비등기이사를 포함하여 각 부의안건을 의결한 것이 확인되었다.

3) 대법원 1982.7.13. 판결, 80다2441 「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,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, 이사회 상호간에도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.」

4) 민법 제52조(변경등기)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[표2] '23년 체육회 이사회 개최 및 참석 현황

(단위 : 명)

구 분	회의명	참석현황(의사 및 의결정족수)				비 고
		재적	참석*	비등기이사 참석현황**		
				인원	성 명	
내 역	'23 정기이사회	67	**	**	구평 ☐, 정보 ☐, 김재 ☐, 박성 ☐, 김풍 ☐ 정재 ☐, 이강 ☐, 조영 ☐, 김영 ☐, 박수 ☐ 방운 ☐, 이길 ☐, 이영 ☐, 원유 ☐, 허유 ☐ 이상 ☐, 임종 ☐	
	'23 (1차)임시이사회	77	**	**	구평 ☐, 우종 ☐, 이혁 ☐, 김석 ☐, 이문 ☐ 김정 ☐, 이기 ☐, 김재 ☐, 유형 ☐, 양병 ☐ 정병 ☐, 진영 ☐, 김영 ☐, 박수 ☐, 김홍 ☐ 김영 ☐, 한명 ☐	
	'23 (2차)임시이사회	75	**	**	김정 ☐, 김재 ☐, 우종 ☐, 이기 ☐, 김민 ☐ 황해 ☐, 김홍 ☐, 유형 ☐, 박수 ☐, 황교 ☐ 양병 ☐	
	'23 (3차)임시이사회	75	**	**	박수 ☐, 황교 ☐, 황해 ☐, 유형 ☐, 정재 ☐ 김홍 ☐	
	'23 (4차)임시이사회	75	**	**	김정 ☐, 이기 ☐, 김민 ☐, 황해 ☐, 양병 ☐ 김영 ☐, 김동 ☐, 정창 ☐	
	'23 (5차)임시이사회	75	**	**	김동 ☐, 정창 ☐, 황해 ☐, 양병 ☐, 오세 ☐ 공광 ☐, 오충 ☐, 홍성 ☐, 손장 ☐, 김일 ☐ 송정 ☐, 김정 ☐, 이길 ☐, 이근 ☐, 허만 ☐	

\* 서면결의 제출(또는 위임) 인원 포함

\*\* 비등기이사의 경우 '24년도 現 비등기이사 현황을 근거로 확인하였으며,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위 [표2]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비등기이사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자가 이사회에 참석하였고, 체육회는 이를 재적인원 포함하거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기산하는 등 비등기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은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### [관계기관의 의견]

체육회 담당 과장은 비등기 이사에 대하여 재적인원에 포함하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기산하였으나, 회의 종료 후 비등기이사를 제외하고 재기산을 통해 의결여부를 재검토한다는 의견이나, 이사회 회의록상 이미 이사회 진행간 공식적인 성원을 보고하였고, 부의안건 의결시 전원 동의는 비등기이사의 의결권을 허용한다는 체육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할 것이므로, 담당과장의 의견은 인정되지 않는다.

## 다. ‘자문위원’ 운영 부적정

체육회는 「정관」 제22조(임원) 제1항을 통해 각 임원의 정수를 규정하였고, 그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. 특히 동조 제1항 제3호에서는 ‘자문, 고문(명예회장)’의 직위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, 동 직위가 임원으로서의 이사회 정족수, 의결권행사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체육회 「정관」의 근거 규정인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 「시군체육회 규정」 제22조 제1항<sup>5)</sup>에서는 시군체육회 임원에 대하여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, 별도로 동 규정 제56조<sup>6)</sup>에서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명예회장, 고문의 직위를 규정하고 있다. 반면, 체육회는 명예회장, 고문의 직위에 대하여 「정관」 제29조(임원의 결격사유) 제4항을 통하여 결격사유를 명시하면서도, 그 설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.

이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회장, 고문의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초과하여 체육회 ‘임원’으로서 선임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되며, 실제로 체육회는 각 이사회마다 재적, 의사 및 의결정족수 기산시 ‘자문위원’을 포함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**[표3] 자문위원 이사회 참여 현황**

(단위 : 명)

구분	회의명	‘자문위원’ 참석현황		비고
		인원	성명	
2021	‘21 정기이사회	1	문태☐	
2023	‘23 (1차)임시이사회	3	우종☐, 이혁☐, 장종☐	

※ 위 현황은 이사회 참여 후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기산하여 포함한 현황임.

- 5) 본회 「시군체육회 규정」 제22조(임원) ① 시군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 
 1. 회장 1명 2. 부회장 15인 이하(전문체육, 생활체육, 학교체육,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) 3. 이사 15명 이상 70명 이하(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을 포함한다) 4. 감사 3명
- 6) 본회 「시군체육회 규정」 제56조(명예회장 및 고문) 시군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을 둘 수 있다.  
 1.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.  
 2.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.

체육회 「정관」 제22조에서 명시한 자문, 고문(명예회장)의 직위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, 임원으로서의 재적,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함이 타당하다.

### [조 치 사 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

이사회를 구성하는 ‘임원’에 대하여 ① 등기 및 비등기 이사의 재정립, ② 임원의 의결권에 대한 서면결의 또는 위임 행위 제한 ③ 자문으로서의 역할 수행 직위(자문, 명예회장)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향후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각종 민원제기 및 법적 쟁송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특히, 체육회는 명예회장, 고문 등 자문역할의 직위에 대하여 본회 「시군체육회 규정」을 준용하여 「정관」 등 관련 규정 개정 등 재정비 후 조치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[일련번호 : 3]

## 경기도체육회

### 개선조치

[제 목]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.

#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는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등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체육회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회계처리를 실시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.

##### 가. 국도비 보조금 분할 구매 의심

체육회는 [표1]과 같이 한 개의 보조사업에서 시거나 대상자 또는 업체를 분할하여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가 의심되는 보조금

집행이 이루어졌고 분할구매하면서 2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를 증빙하지 않는 등 계약 처리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였다.

**[표1] 분할구매 현황**

사업명	구매내역			업체정보	
	내역	지출일자	금액	업체명	대표명
2023 ****	세라밴드	2023.**.**	***,000	건****	박00
	토닝볼 등	2023.**.**	***,000	건****	박00
2023 **** *	풋살화 등	2023.**.**	*,***,350	이****	박00
	파구유니폼 등	2023.**.**	*,***,000	대****	김00
2023 **** **	서틀콕 등	2023.**.**	***,000	대****	김00
	스파이크볼 등	2023.**.**	***,000	이****	박00

**나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미발행**

대회 및 각종행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시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‘주최자 배상보험’을 가입하는데 스포츠안전재단은 보험가입증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하고 보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증빙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단체이므로 회계처리시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증빙 할 수 있다.

**[조치사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**

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지출에 있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의 회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회계처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4]

# 경기도체육회

## 개선조치

[제 목]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부실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공공성이 있는 단체로서 공직윤리 제도를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에 따라 광주시민을 포함하는 경기도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공직윤리법」 등 관계 법령 및 「광주시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」(이하 “행동강령”이라 한다.)을 준수하여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행동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# 가. 행동강령책임관 미지정

체육회는 「행동강령」 제47조(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)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‘행동강령책임관’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지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.

이는 ‘행동강령책임관’이 해야 할 일인 교육, 상담, 점검, 관리, 운영 등의 역할의 부재가 발생하게 되어 부패예방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이 어렵다.

#### 나. 부패방지 교육 미실시

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,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, 스포츠인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「행동강령」 제46조(교육)에 따라 부패방지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.

#### 다. 행동강령 이행점검 미실시

체육회는 「행동강령」 제48조(준수 여부 점검)에 따라 임직원의 행동강령을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.

#### 라. 임직원 직무관련 거래 미신고

체육회 임원은 「행동강령」에 따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거나 알선·청탁, 물품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등 특혜를 배제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 하고 있다.

또한 [표1]과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제33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)에 따라 직무관련된 내용을 양식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.

[표1] 임직원 거래 현황

사업명	구매내역		업체정보	
	내역	금액(원)	업체명	대표명
2021 ****	현수막	***,500	본****	구00
2021 **** *	현수막	***,000	폼****	박00
2021 **** **	현수막	***,000	본****	구00
2021 **** ***	홍보비	***,000	폼****	박00
2021 **** ****	홍보비	** ,800	폼****	박00
2022 **** *****	운영비	***,000	폼****	박00
2022 **** *****	지역리그 현수막	** ,000	본****	구00
2022 **** *****	버스임차	* ,***,000	새****	강00
2022 **** *****	현수막	***,000	본****	구00
2022 **** **	운영비	***,000	본****	구00
2023 **** *****	현수막	***,000	본****	구00
2023 **** *****	지역리그 현수막	** ,000	본****	구00
2023 **** *****	배너	***,000	본****	구00
2023 ****	배너	** ,000	본****	구00
2023 **** ***	홍보비	***,600	폼****	박00
2023 **** **	홍보비	** ,500	폼****	박00
2023 **** *****	현수막	***,000	본****	구00
2023 **** *****	배너	** ,000	폼****	박00
2023 ****	현수막	***,000	폼****	박00

라.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미수립

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힘써야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제도에 맞게 신고하고 예방해야 하나 운영지침이 없다.

[조 치 사 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

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관을 지정하여 관리·감독 하여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,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지침화하여 운영하고 이를 본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5]

# 경기도체육회

## 권고조치

[제 목] 민원처리 및 규정 재정비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, 「광주시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」(이하 “민원처리 규정”이라 한다.)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·공정·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는 「정관», 「민원처리 규정」에 따라 민원인을 보호하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# 가. 민원처리 창구의 다양화 필요

체육회는 광주시청, 경기도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, 방문민원 등으로 문의 및 민원을 접수하고 「민원처리 규정」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.

본회는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, 정보공개청구시스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창구를 다양화하고 있으나 체육회는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.

## 나. 민원처리 기한 정확한 명시 필요

체육회는 「민원처리 규정」을 제정하면서 민원처리 기간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[별표]를 삭제하여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관계법령 등의 기준을 벗어나게 운영하고 있다.

## 다. 민원사무처리 규정 조항 재검토

체육회는 「경기도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」을 준용하여 「광주시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」을 2024.\*\*.\*\*일자로 제정하였다.

그러나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[표1]과 같이 일부 조항의 자구가 경기도체육회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조항의 혼동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

**[표1] 민원사무처리 규정**

구분	광주시체육회	자구수정
제3조 제2항	본회의 시·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~	본회의 읍면동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
제11조 제1항	처리기간은 <u>별표1의 민원유형별 처리기간</u> 에 의한다. <별지 제1호> 민원사무처리부	<별지 제1호> 민원유형별 처리기간

## [조치사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

「광주시체육회 민원사무처리 규정」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빠른시일내 재정비하여 개정하고 민원처리 창구를 홈페이지에 경기도민을 비롯한 광주시민 누구나 문의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일련번호 : 6]

# 경기도체육회

## 권고조치

[제 목] 사무국 운영 규정 부실

[소 속 기 관] 광주시체육회

[내 용]

### 1. 업무개요

광주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.)는 「광주시체육회 정관」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.)등 제규정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광주시민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.

### 2.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

체육회 「사무국운영 규정」, 「직제 규정」, 「직제규정 시행세칙」에 따라 직제 및 업무분장 등을 계획하여 체계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한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체육회는 2024.\*\*.\*\*일자로 「사무국운영 규정」을 최신화 개정하면서 제21조(기구)를 통해 3개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2023.\*\*.\*\*일자로 개정된 조항을 유지하였다.

하지만 수감기간(07.08 ~ 07.10)에 체육회 기구를 확인한 결과 총 2개 팀으로 경영지원팀과 스포츠육성팀의 역할을 한팀에서 하였고 스포츠진흥팀이 구성되어 있었다.



또한 체육회 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제규정을 검토하였을 때 [표1]과 같이 조항간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.

**[표1] 기구 구성상 조항 충돌 제규정**

사무국 운영 규정	직제 규정	직제 규정 시행세칙
제21조(기구) 경영지원팀, 스포츠육성팀, 스포츠진흥팀	제6조(기구) 체육과 2과, 부서의 하위기구 3개 이하의 팀	제6조(경영지원, 스포츠육성팀) 제7조(스포츠진흥팀)

**[관계기관의 의견]**

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직제구조 변경을 위한 규정개정을 실시하였고 현재 정원으로 업무의 보다 높은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“광주시청 담당부서와 논의하던 중 다양한 이유로 인원충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.”라고 답하였다.

**[조 치 사 항] 광주시체육회 회장은**

규정끼리 충돌되지 않도록 광주시청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중·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규정을 빠른시일내 재정비하여 본회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